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수수료감면대상을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에 반영하고, 전자파일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수수료를 조례 제3조(요율)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에 추가

2. 주요골자

가.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유 추가

▷ 안 제8조 제2항 1호

나. 비용감면을 위해서는 감면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감면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 제3항 신설

다. 전자파일로 공개되는 정보공개수수료 추가명시

▷ 현행 제3조(요율)의 【별표2】

3.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4. 1. 29 개정 됨에 따라 전자파일로 공개되는 정보공개수수료를 추가하고(조례 제3조 별표 2.) 현재 비영리단체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그 직원도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던 것을 법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감사를 위한 목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겠끔 문항을 삽입 하려는 것과
- 이때 그 비용을 감면 받기위해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 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제3조 별표2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표에 전자파일의 열람신청과 전자파일의 사본 복재물에 관한 수수료를 추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일반문서의 열람, 복재 수수료와 거의 같으므로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 제8조의 문구수정 및 신설조항 또한 동법 시행령개정 취지와같이 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을것으로 판단됨.